

## 충청북도임업시험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임업시험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을 “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” 로 한다.

“제1조(설치)” 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설치) 임업에 관한 시험연구 및 치산사업 시행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(이하 ‘연구소’ 라 한다)를 둔다.

제2조(위치) 내지 제3조(기관의 병설) 중 “시험장” 을 “연구소” 로 하고

제4조(업무)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연구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임업에 관한 시험 및 연구
2. 중앙임업시험장과의 지역적 연락시험
3. 우량묘목의 생산과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의 조림 및 보호
4. 사방사업의 설계, 시공 및 시설의 보호관리
5. 사방에 관한 연구조사 및 시험
6. 임도시설의 설계, 시공 및 산사태 예방복구
7. 기타 임업발전에 관한 사항

“제5조(장장, 병원장, 학교장)” 을 “제5조(소장, 병원장, 학교장)” 으로 하고 제1항중 “시험장” 을 “연구소” 로, 제2항 및 제3항중 “장장” 을 “소장” 으로, “장무” 를 “소무” 로 한다.

제6조(정원 및 출장소) 내지 제13조(공시종자의 봉합)와 제15조(수수료의 면제) 중 “시험장” 을 “연구소” 로, “시험장장” 을 “연구소장” 으로, “장장” 을 “소장” 으로 한다.

(별지 제1호 서식) 내지 (별지 제3호 서식)중 “임업시험장장”을 “산림환경연구소장”으로 한다.

##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다른 조례의 폐지) 이 조례 시행과 함께 충청북도치산사업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